

# 미들스타리그 경기 규정



**INCHEON UNITED F.C.**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 목 차

- 제1조 경기장 및 안전
- 제2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 제3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 제4조 경기 규칙
- 제5조 승자결정 방식
- 제6조 승점
- 제7조 순위결정
- 제8조 출전 자격
- 제9조 선수단 안전
- 제10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제11조 유니폼 및 장비
- 제12조 사용구
- 제13조 경기일정 준수
- 제14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 제15조 경기시간 준수
- 제16조 경기관계자 미팅
- 제17조 동일개최 및 혼합개최 제한
- 제18조 경기감독관
- 제19조 영상 녹화 기기 사용
- 제20조 경기중지 결정
- 제2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 제22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제23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 제24조 팀, 지도교사 및 선수에 대한 제재
- 제25조 제소
- 제26조 상벌
- 제27조 통산기록
- 제28조 경기결과 보고
- 제29조 대회요강

### 제1조 경기장 및 안전

1. 미들스타리그 참가 학교(이하 학교)는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하며, 경기장 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홈 학교는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구단의 지시 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학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홈 학교는 대회 참가 신청시 홈팀 경기장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들스타리그 공식경기(이하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4. 학교 외 기타 경기장을 미들스타리그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경기개최 5일 전까지 경기장을 점검하여 구단에 경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 외 운동장 사용시 홈 학교에서 대관해야 한다.
5. 경기장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경기장 최소 규격은 길이 60m~105m, 너비 35~68m 이내여야 한다.
  - ② 각종 라인은 각 운동장의 사정에 맞게 홈 팀에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
6. 구단은 접수 후 경기장 규격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학교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앞 4항의 절차에 따라 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홈 학교가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 2항에 따른다.
8. 제4의 심판(대기심판)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하며, 경기감독관과 동석할 수 있다.
9.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비나 설비 외에는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협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 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10. 미들스타리그 결승전은 인천유나이티드 홈 경기장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2조 약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1. 홈 학교는 강설, 강우 등 약천 후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2. 약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홈 학교에서 경기 개최 4시간 전까지 홈 경기장 상태 사진 등의 자료를 포함한 사유와 함께 경기 개최 중지를 구단에 요청하여야 하며, 구단은 경기 개최 4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 결정과 함께 경기 일정 변경을 양 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약천후의 상황은 구단에서 판단하며, 양 팀은 구단의 결정에 따른다.

### 제3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공식경기는 구단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홈 학교가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학교의 주관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4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FIFA 및 KFA의 통상적인 경기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구단이 결정한다.

### 제5조 승자결정 방식

1. 예선은 전·후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처리한다.
2. 본선(32강~결승)에서는 전·후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Penalty Shoot Out)로 승자를 결정한다.

### 제6조 승점

본 대회의 승점은 승점 3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을 부여한다.

### 제7조 순위결정

1. 조별 예선 순위는 승점 ➡ 벌점(낮은 팀) ➡ 득실차 ➡ 다득점 ➡ 다승 ➡ 승자승 ➡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2. 벌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고 및 퇴장 관련 벌점
    - 1) 경고: 1점 2) 경고2회 퇴장: 2점 3) 직접 퇴장: 3점 4) 경고1회 후 퇴장: 4점
  - ② 상벌위원회 징계 관련 출장정지 1경기당 : 3점
  - ③ 지도교사 퇴장, 학교(임직원 포함)에 부과된 징계는 팀 벌점에 포함한다.
  - ④ 사후징계 및 감면 결과는 팀 벌점에 포함한다.

### 제8조 출전 자격

1. 미들스타리그 홈페이지에 선수 등록 및 구단의 승인을 받은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앞 항에 의거 구단에 등록을 완료하고 출전선수 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가지며, 벤치에 착석할 수 있다. 경기 중 선수지도행위는 공식지도교사 1명만 할 수 있다.
3. 제재 중인 지도자(이하 지도교사)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출장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지도교사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 착석만 가능하며, 경기 전 훈련 지도 및 경기 중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 ② 본 항 1호를 위반한 지도교사는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4.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지도교사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학교에 있다.

### 제9조 선수단 안전

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팀은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만일 선수의 신체 이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2. 참가팀은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각 팀은 필요에 따른 기타 안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참가팀은 대회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1. 공식 경기에 참가하는 학교는 경기개시 3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지도교사,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지도교사 수는 최대 1명까지로 한다.
3.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 선수 교체는 대회 요강에 따른다.
4. 출전선수명단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을 준수한다.
5.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 유니폼 및 장비

1. 모든 공식경기에서는 반드시 구단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유니폼에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번호(1~99번에 한하며 번호는 중복할 수 없음)와 일치한 배번이 유니폼 색상과 구분되어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팀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암 밴드)를 착용 하여야 한다.
4. 공식경기 전 구단(경기감독관) 및 상대 학교와 유니폼 착용 색상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 유사한 색상의 유니폼일 경우 원정 학교가 조끼를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5. 선수는 신체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 제12조 사용구

공식경기 사용구는 구단에서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제13조 경기일정 준수

학교는 정해져 있는 공식경기 개최일, 킥오프 시간 및 개최지 등의 경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1. 학교는 공식경기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단에 해당 경기의 일시 또는 경기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기 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단은 이를 심의한다. 홈 학교는 원정 학교와 일정 및 장소에 대해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구단에 변경 신청한다.
3. 공식경기의 일시 또는 경기장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변경을 신청한 학교가 책임진다.

### 제15조 경기시간 준수

1. 본 대회의 예선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이며, 본선(32강~결승)의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30분이다. 모든 학교 미리 정해진 경기 시작 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하프타임은 10분 이내로 하되, 양 팀 출전선수는 후반 전 출전을 위해 후반전 개시 1분전(하프타임 9분)까지 그라운드에 대기해야 한다.

2. 학교는 경기 시작 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경기 시작 또는 재개 시간이 1분 이상 지연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해당 학교에 승점 삭감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1회 미준수 시 : 경고
  - ② 2회 미준수 시 : 승점 1점 삭감
  - ③ 3회 이상 미준수 시 : 승점 1점 삭감 및 상벌위원회 제소
3. 경기에 참가하는 학교는 경기시작 3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①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3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구단에 그 사유와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은 경기시간 변경 유무를 심판 및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구단으로 통보한다.
    - ②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시각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은 15분간 대기할 의무가 있다. 15분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제22조 1항에 의한다.
    - ③ 경기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학교에 있다.
    - ④ 홈/원정팀은 경기개최지로의 이동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이동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팀의 도착 지연으로 킥오프가 지연될 경우, 상기 2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학교에 재제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6조 경기관객자 미팅

1. 경기시작 30분전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 주심, 양팀 지도교사가 참석하여 실시한다.
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경기와 관련한 구단의 주요방침
  - ② 판정 가이드라인 등 심판판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해당경기 특이사항 공유

### 제17조 동일개최 및 혼합개최 제한

1. 공식 경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2경기 이상 개최할 수 없다.
2. 공식경기는 구단 이외에 주최하는 축구경기 및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 할 수 없다.

### 제18조 경기감독관

1.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대기심이 경기감독관을 겸할 수 있다.
2. 경기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경기개시 3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개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 ②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경기개시 30분전, 홈 학교 및 원정 학교의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④ 사전에 결정된 양 학교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학교의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 학교의 조끼 착용을 결정한다.

- ⑤ 경기중단 또는 경기장에서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미들스타리그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상벌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상기 1~7호 이외에 구단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경기감독관은 하절기(6월~8월) 기간 중, 쿨링 브레이크 제도(워터 타임)의 실시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 영상 녹화 기기 사용**

- 1. 전력분석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영상 녹화 가능 기기(스마트폰, 카메라, 캠코더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 영상 녹화 외의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해당 기기를 통해 녹화된 영상으로 경기 내 판정에 대한 재소는 불허한다. 단, 부정 선수 출전 등의 경우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3. 드론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 4. 허가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를 이용해 경기중 판정 항의 시 퇴장된다.

**제20조 리그 중단 및 경기중지 결정**

- 1. 전염병, 천재지변 등 구단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구단의 판단에 의해 당해연도 리그를 중단할 수 있다.
- 2.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학교 및 원정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3. 상기 2항의 경우 또는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4. 경기가 전반전에 중지된 경우 제21조 3항에 따라 재경기를 실시하며, 후반전에 양 팀의 득실차가 있을 시 중지된 경우 종료 시점의 경기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 5.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그 사유를 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 1. 공식경기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중지된 경우,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단이 재경기의 일시 및 경기장을 정하며, 홈 학교의 경기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단은 홈/원정을 변경할 수 있다.
- 3.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① 이전 경기에서 양 팀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예선은 50분간, 본선은 6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 ② 이전 경기에서 양 팀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 4. 재경기시, 상기 3항 1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이 인정되며 선수 교체는 팀당 허용하는 최대 인원수까지 가능하다. 상기 3항 2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이 인정되며 선수교체 횟수와 인원 수 역시 이전 경기의 중지시점까지 사용한 횟수를 차감하여 남은 횟수만 사용할 수 있다.
- 5. 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유효하며, 경고 및 퇴장에 대한 처벌(징계)은 경기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제22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1.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어느 한 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학교가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공식 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학교로부터 제소가 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학교가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앞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학교가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학교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 4. 앞 2항의 무자격선수는 미들스타리그 미등록 선수, 대회 참가 부적격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를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23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 1.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학교가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대회 전체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학교와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 3. 잔여 경기를 포기한 학교는 차년도 미들스타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 팀, 지도교사 및 선수에 대한 제재**

- 1. 경고 및 퇴장조치에 따른 제재
  - ① 1경기 경고 2회로 퇴장의 경우 다음 1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이 경고는 누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 ② 직접 퇴장의 경우 다음 1경기가 출전 정지된다.
  - ③ 경기 중 경고 1회를 받은 선수가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 출전정지 및 당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 ④ 전 경기에서 경고 1회를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 당했을 경우 다음 1경기 출전정지 및 퇴장 당시 받은 경고 2회는 경고 누적 횟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 경기의 경고 1회는 유효하다.
  - ⑤ 선수 및 지도교사는 처음 3회, 이후 2회의 경고누적 시 다음 1경기가 출전정지 된다.
  - ⑥ 본 대회에서 받은 경고, 퇴장(경고 2회 퇴장, 직접 퇴장, 경고1회 후 직접 퇴장), 징계사항에 의한 출전정지는 본선까지 연계 적용한다.
- 2. 경기 후이라도 퇴장 및 심각한 반칙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단은 해당 선수 및 지도

- 교사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3. 경기 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지도교사는 퇴장 조치하고,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4.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지도교사와 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5.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였을 경우, 주최 측(또는 경기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경기포기(기권)로 간주하여 제22조 1항에 따르며, 구단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 6. 참가 등록된 지도교사 외 인원이 심판 판정 등 대회 운영에 항의하는 경우, 1회 발생 시 경고, 2회 발생 시 승점 1점 감점의 제재를 부과한다.
- 7.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 및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단에서 판단하여 구단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 8.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는 시즌 및 대회에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 9.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지도 교사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학교에 있다.
- 10. 미들스타리그 기간 중 소속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시 해당 학생은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25조 제소**

-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교장) 명의로 공문과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한다.
- 2. 제소는 해당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심판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단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6조 상벌**

- 1. 목적 : 대회의 징계와 포상의 적정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대상
  - ① 대회에 등록된 학교
  - ② 대회 참가 지도교사 및 선수
- 3. 구성 / 운영
  - ①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단에 상벌위원회를 둔다.
  - ② 상벌위원회는 구단 마케팅부장, 마케팅팀장, 마케팅팀원 이상 3명으로 구성되며, 마케팅부장은 상벌위원장의 역할을 겸한다.
  - ③ 마케팅팀원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간사는 상벌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벌위원회 심의 준비·상벌위원회 소집 통지·회의록 작성·상벌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상벌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 4. 상벌위원회 소집

상벌위원회는 2인 이상의 상벌위원 소집 요청, 징계 제소 접수에 따라 상벌위원장이 소집한다.

5. 징계의 대상별 종류

- ① 참가팀에 대한 징계
  - 1) 자격정지 : 금번 대회 및 차년도 대회 출전 불가
  - 2) 승점감점
  - 3) 경기제한 : 홈경기 지위 박탈 또는 구단 지정 중립구장 홈경기 개최
  - 4) 경고
- ② 개인에 대한 징계 : 지도교사, 선수
  - 1) 제명 : 금번 대회 및 차년도 대회 출전 불가
  - 2) 출장정지
- ③ 징계 내용은 차년도까지 연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 통산기록**

- 1. 승부차기 승 : 통산 자료에는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학교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 2. 기권승, 몰수승, 순연경기 승리는 기록에 포함시키진다.
- 3. 추첨 승 : 추첨 승은 앞 1항의 승부차기 승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개인 기록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① 개인 연속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경기에 따라 연계성을 부여한다.
  - ② 통산 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 5. 개인기록 순위결정
  - ① 개인기록순위 결정은 본 대회(예선 및 본선) 성적으로 결정한다.
  - ② 득점(Goal) 개인기록순위 결정의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최다득점선수 2) 출전경기가 적은 선수 3)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

**제28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와 경기감독관 보고서, 양 팀 지도교사의 서명이 포함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제29조 대회요강**

공식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단이 정한 「대회요강」에 의한다.